

1 고유번호증, 고용관계 및 보조금 지급 등 관련사항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p>① 고유번호증 발급</p>	<p>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p> <p>(안내사항)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1.7. 이후 실제 적용되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표기 방법은 지침 예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는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접수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인 산하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아닌 시설별로 별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함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상 명의를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인가증, 허가증 포함. 이하 같음)에 표시된 운영자 성명 또는 운영법인 명칭과 동일해야 함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로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할 것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 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 향후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 지양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 법인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내용생략)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바람 	<p>마.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별도 발급</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설별로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할 것</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설치·운영(수탁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 “법인명(단체명)”에 법인명칭을 기재하거나 법인명칭과 시설명칭을 병기하는 형태 등으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세무 관서에 신청할 수 있음(권고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람</u> 	<p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p.12 ~17</p> <p style="text-align: right; vertical-align: bottom;">※고유번호증 변경 예시 삭제</p>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① 고유번호증 발급	<p>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수탁 받은 경우도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의 명의로 해당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탁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수탁 받은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할 것 -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 	<p>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생략, 변경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0.
② 시설장·종사자 공개모집	<p>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시행일 2019. 1. 1.)</p> <p>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p> <p>가. <u>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서</u>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p>나. <u>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에 인사이동이</u>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동일한 설치·운영자"란 각 시설의 설치신고증상 설치·운영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의 명의를 모두 동일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인 경우를 의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이동하려는 시설의 시설장에 한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p>나. <u>공개모집 원칙의 예외</u></p> <p>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u>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u>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전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②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시킬 것 </div> <p>가. <u>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u></p> <p>* 채용 당시 ①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등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로 적용 가능</p> <p>나. <u>동일한 설치·운영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시설 간 인사이동</u></p> <p>* 다만,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 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21.1.1부터 시행) (종교 단체의 인사 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 결정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p>	p.41 ~42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② 시설장·종사자 공개모집	<p>다. <u>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p> <p>*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 시설 설치신고증 명의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사업주 명의가 해당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p> <p>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법인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인 법인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④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p> <p>② ①의 가, 나, 다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중략)</p> <p>③ ①의 가, 나, 다목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空席)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충원(充員)할 것</p> <p>④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장·종사자 등과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p> <p>⑤ 종전 지침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던 종교·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각 법인 관계자의 임명 건은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건은 인정하되,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 건부터는 불인정</p>	<p>다. <u>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u></p> <p>*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p> <p>② ①의 가, 나, 다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중략)</p> <p>③ ①의 가, 나, 다목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空席)은 <u>가, 나, 다목에 따라 충원(充員)되지 않을 시 공개모집 절차로 충원할 것</u></p> <p>④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장·종사자 등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위반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p> <p>⑤ 「'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던 <u>종교·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대한 각 법인 관계자의 임명 건은 '19년 1월 1일 이전의 건에 한하여 인정</u></p>	<p>p.42</p> <p>p.43</p>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③ 종사자 채용시 준수사항	<p>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 시설설치 신고증(인가증, 허가증) 등에 설치·운영자로 표기된 자를 의미함 ** 개인인 설치·운영자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는 예외 - 실질적인 채용절차는 시설장이나 법인 관계자 등이 진행을 하는 경우* 라도 이러한 행위와 계약서상의 명의를 반드시 시설의 설치·운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 *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代理)하여 채용계약을 진행하는 것임 - 근로계약서상에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도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 시설 수탁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종사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 교부 지양 ● 다만, 위의 사항은 현재 시설관련 고용실정 등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부터 적용할 것 <p><참고>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 부과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채용조건 변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0이 신설·시행(2019.6.12.)됨에 따라, 2019.6.12.부터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할 것 	<p>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u>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할 수 없음</u> - <u>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음</u> *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위치 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인 종사자의 임면보고 -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시설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보고할 것 	<p>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 인용 (기존 내용 이동)</p> <p style="text-align: center;">p.43</p>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④ 보조금 지급	<p>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생 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것 ● <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p>① 보조금의 신청은 시설신고증상 설치·운영자(수탁법인인 경우는 해당 수탁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받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만 해당 시설 관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해당 법인과 개인만 보조금 신청이나 수령이 가능 - 실무상 “시설보조금”이나, “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지양(止揚)해야 함 - 시설은 그 설치·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사업장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보조금을 교부하는 공무원은 해당 보조금이 “시설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설치·운영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실무상 시설장이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시설장이 설치·운영자를 대리(代理)하여 신청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관련 서류상의 명의를 반드시 설치·운영자의 명이어야 함. <p>②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경우 그 보조금 수령자는 설치·운영자로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을 수령자로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를 위반하는 것이 됨 <p>③ 보조금은 설치·운영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명의의 시설명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시설명의 통장개설은 불가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항 참조 - 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자인 경우 법인명의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므로 보조금도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 중 해당 시설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지정된 통장에 입금해야 함 	<p>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생 략, 변경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보조 사업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교부 및 사용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p.33</p> <p>p.33</p> <p>p.34</p>

구분	2020년	2021년(안)	비고						
	<p>●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통장을 개설하되,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 부기(附記)할 수 있음 - 개인이 설치·운영자인 경우 설치·운영자 개인명의로 시설명칭이 부기(附記)된 통장에 입금해야 함</p> <p>[통장개설 관련 근거 : 「금융실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p> <table border="1" data-bbox="259 320 983 531"> <thead> <tr> <th>구분</th> <th>개인</th> <th>법인</th> </tr> </thead> <tbody> <tr> <td>실명 확인방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주민등록번호 * 실무상 주민증 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확인 불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 등기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 - 사업장중심의 사업자등록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시설별로 통장이 개설 되는 부수효과 </td> </tr> </tbody> </table> <p>④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토록 안내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우선 수입 처리한 후 시설전출금으로 세출하고, 이를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회계나 시설회계가 공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중의 일부이므로, 시설회계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임 ● 다만 위의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개선과 연계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21년 6월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시정·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21년 7월 이후 보조금 지급분부터 적용할 것 ●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른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도 가능 	구분	개인	법인	실명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주민등록번호 * 실무상 주민증 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 등기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 - 사업장중심의 사업자등록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시설별로 통장이 개설 되는 부수효과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수령한 보조금은 시설회계 중 보조금 수입으로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회계에서 우선 수입 처리한 후 시설전출금으로 세출하고, 이를 시설회계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회계나 <u>시설회계가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중의 일부이므로, 시설회계에서</u>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시·도별로 기 도입 운영 중인 보조금전용카드와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시행하는 등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람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 기타사항 :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10.4.19.)한 '보조금 통장 단일화'*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시행함 *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유형에 따른 복수의 보조금통장 사용도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p.35</p>
구분	개인	법인							
실명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주민등록번호 * 실무상 주민증 확인 *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 등기부가 아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 - 사업장중심의 사업자등록증 제도를 채택한 경우 시설별로 통장이 개설 되는 부수효과 							

2 그 외 개정사항

2020년					2021년(안)					비고	
I. 사회복지시설 현황					I. 사회복지시설 현황						
②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②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p.5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p.6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	(생략)									
아동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제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이용	(생략)									
장애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추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장애인쉼터
	이용	(생략)									

2020년	2021년(안)	비고
<p>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p>	<p>II.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p>	
<p>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p> <p>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p> <p>참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p> <p>■ 시설장의 경우</p> <p>● 법 제35조제2항</p> <p>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법 제19조제1항</p> <p>1. 미성년자</p> <p>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p> <p>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p> <p>참고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p> <p>■ 시설장의 경우</p> <p>● 법 제35조제2항</p> <p>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법 제19조제1항</p> <p>1. 미성년자</p> <p>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p> <p>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p> <p>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 되는 것은 아님(법제처 해석 19-0491)</p>	<p>p.23-24</p>

2020년	2021년(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⑥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2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u> * <u>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u> - <u>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u> - <u>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u> * <u>「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조문 신설</u> ● <u>이와 관련한 상세한 처리 방법 등은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 조문 및 개별 지침을 참고하기 바람</u> 	<p>p.51</p>

2020년	2021년(안)	비고																
<p>7 <u>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u> 나. 미신고시설 상시·관리감독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p> <p>참고 중점 관리대상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p>● 조사결과 조치사항</p> <p>-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 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u>입소 유도</u></p>	<p>8 <u>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u> 나. 미신고시설 상시·관리감독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p> <p>참고 중점 관리대상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p>* <u>주민들의 제보나 여러 정황으로 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5인 미만 가구라하더라도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u></p> <p>● 조사결과 조치사항</p> <p>-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 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되, 단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p>	p.58																
<p>8 <u>사회복지시설 평가</u> (생 략) [2019~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p> <table border="1" data-bbox="91 1125 976 1437"> <thead> <tr> <th>평가년도</th> <th>평가대상시설</th> </tr> </thead> <tbody> <tr> <td>2019</td> <td>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td> </tr> <tr> <td>2020</td> <td>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td> </tr> <tr> <td>2021</td> <td>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td> </tr> </tbody> </table> <p>※ 연도별 평가대상 시설은 신규유형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p>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0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p>9 <u>사회복지시설 평가</u> (생 략, 변경 없음) [2019~2021 사회복지시설 평가]</p> <table border="1" data-bbox="1084 1125 1960 1437"> <thead> <tr> <th>평가년도</th> <th>평가대상시설</th> </tr> </thead> <tbody> <tr> <td>2020</td> <td>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유형]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td> </tr> <tr> <td>2021</td> <td>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규모 유형] 한부모공동생활가정</td> </tr> <tr> <td>2022</td> <td>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유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td> </tr> </tbody> </table> <p>※ <삭 제></p>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0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유형]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규모 유형] 한부모공동생활가정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유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19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20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0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유형]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2021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규모 유형] 한부모공동생활가정																	
2022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유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020년	2021년(안)	비고
<p>나. 평가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평가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중 2017년 1월 1일 이전 설치·신고 된 시설 ●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고 정상 운영 중이며, 시설 설치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 관계없음) -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 ●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설치·신고 된지 3년 미만 신규시설 - 평가실시 전 폐지 또는 타 유형 변경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시설신축, 기능보강 등 평가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자료소실 등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평가대상기간 3년 중 2년 이상 휴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평가대상기간이 4년인 공동생활가정은 3년 이상 휴지시설 ● 평가제외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p>나. 평가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21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공동생활가정</u> ●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18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음 - <u>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복지부와 협의 필요 ●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년 미만 신규시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신고번호가 '18년 이후로 변경된 시설은 제외대상이 아니며, 시설신고번호와 설립일자는 참고용으로 실제 운영기간을 확인하여 대상선정 - 평가실시 전 폐지 또는 타 유형 변경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자료소실 등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자체에서 근거자료 제출 필요</u> - 평가대상기간 3년 중 2년 이상 휴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삭 제></u> ● 평가제외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p>p.61</p>

2020년	2021년(안)	비고																				
<p>● 평가결과 및 공개</p> <p>-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5등급(A~D, F)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120 316 974 438"> <thead> <tr>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h>F등급</th> </tr> </thead> <tbody> <tr> <td>90점 이상</td> <td>80점 이상 ~ 90점 이하</td> <td>70점 이상 ~ 80점 이하</td> <td>60점 이상 ~ 70점 이하</td> <td>60점 이하</td> </tr> </tbody> </table> <p>-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반영(감점)되며, 최종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 후속조치로 인해 평가결과 공표가 어려운 경우 등급 부여를 보류할 수 있음</p> <p>- 연속 F등급시설 및 평가거부시설은 평가결과 발표 시 지역 및 시설명 공개</p>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이하	70점 이상 ~ 80점 이하	60점 이상 ~ 70점 이하	60점 이하	<p>● 평가결과 및 공개</p> <p>-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5등급(A~D, F)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1106 320 1960 443"> <thead> <tr>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h>F등급</th> </tr> </thead> <tbody> <tr> <td>90점 이상</td> <td>80점 이상 ~ 90점 이하</td> <td>70점 이상 ~ 80점 이하</td> <td>60점 이상 ~ 70점 이하</td> <td>60점 이하</td> </tr> </tbody> </table> <p>-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반영(감점) 됨</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이하	70점 이상 ~ 80점 이하	60점 이상 ~ 70점 이하	60점 이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이하	70점 이상 ~ 80점 이하	60점 이상 ~ 70점 이하	60점 이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 90점 이하	70점 이상 ~ 80점 이하	60점 이상 ~ 70점 이하	60점 이하																		

<p>9 <u>사회복무제도</u></p> <p>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생략)</p> <p>● '20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인원</p> <p>- 기본직무교육 16,926명</p> <p>- 심화직무교육 7,709명</p>	<p>10 <u>사회복무제도</u></p> <p>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 (생략, 변경 없음)</p> <p>● <u>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온라인 교육 실시(계획)</u></p> <p>- <u>기본직무교육 3개 과정, 심화직무교육 2개 과정</u></p> <table border="1" data-bbox="1039 1142 2004 1473">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기본직무교육</th> <th colspan="2">심화직무교육</th> </tr> <tr> <th>사회복지과정</th> <th>사회복지 공무원 보조과정</th> <th>보건의료과정</th> <th>일반심화과정</th> <th>아동심화과정</th> </tr> </thead> <tbody> <tr> <td>교육시간</td> <td>12시간</td> <td>12시간</td> <td>12시간</td> <td>5시간</td> <td>5시간</td> </tr> <tr> <td>교과목</td> <td>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등 12과목</td> <td>바우처 사업 이해 등 12과목</td> <td>보건의료 서비스 이해 등 12과목</td> <td>수발보호 심층 이해 등 5과목</td> <td>아동놀이지도 방법 등 5과목</td> </tr> </tbody> </table>	구분	기본직무교육			심화직무교육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 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일반심화과정	아동심화과정	교육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5시간	5시간	교과목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등 12과목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2과목	보건의료 서비스 이해 등 12과목	수발보호 심층 이해 등 5과목	아동놀이지도 방법 등 5과목	<p style="text-align: center;">p.69</p>
구분	기본직무교육			심화직무교육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 공무원 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일반심화과정	아동심화과정																				
교육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5시간	5시간																				
교과목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등 12과목	바우처 사업 이해 등 12과목	보건의료 서비스 이해 등 12과목	수발보호 심층 이해 등 5과목	아동놀이지도 방법 등 5과목																				

2020년	2021년(안)	비고
<p>마. 복무관리</p> <p>참고 병역기피자의 고발(「병역법 시행령」 제165조)</p> <p>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②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요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지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요원,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p>	<p>마. 복무관리</p> <p>참고 병역기피자의 고발(「병역법 시행령」 제165조)</p> <p>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②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요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요원,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p>	
<p>IV.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p>	<p>IV.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p>	
<p>② 시설안전점검</p> <p>2) 지자체 안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u>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u> <p>(중 략)</p> <p>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u>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u> 	<p>② 시설안전점검 실시</p> <p>2) 지자체 안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u>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u> <p>(중 략, 변경없음)</p> <p>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u>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u> 	<p>p.119</p> <p>p.121</p>

2020년	2021년(안)	비고
<p>● 시·군·구는 동법 제19조제6~8항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u>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함</u> ('20.2.21.시행)</p> <p>⑤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p> <p>●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시·군·구는 동법 제19조제6~8항,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의3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u>매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함</u></p> <p>⑤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p> <p>●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p> <p>● <u>화재안전 성능보강</u></p> <p>-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u>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u></p> <p>- <u>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음</u></p> <p>※ 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는 2022년 12월 31</p>	<p>p.124</p>

2020년		2021년(안)		비고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p.256 ~ 260	
2. 유사경력		2. 유사경력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2. 유사경력	80%	<p>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u>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u></p> <p>떠.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u>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u></p> <p>※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p> <p>오. <신 설></p>	2. 유사경력	80%	<p>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u>특수학급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u></p> <p>※ ㉮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p> <p>떠.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u>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u></p> <p>※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은 '21.1.1.부터)적용</p> <p>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사도 및 사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u></p> <p>※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1.1.1.부터 적용</p>

2020년	2021년(안)	비고
<p>참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1.부터 적용”의 의미</p> <p>-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소급적용은 되지 않음)</p>	<p>참고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1.부터 적용”의 의미</p> <p>-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년 1월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p>	